

제3절 장애인 복지

1. 장애인 등록

가. 목 적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장애인 등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장애진단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시·군·구 및 읍·면·동 등 복지실시기관의 업무처리절차 등을 규정

나. 개 요

○ 장애인 등록 절차

장애인등록 절차는 거주지 동사무소(장애인담당)에 사진 2매(3×4cm)와 장애인 등록신청서(동사무소비치)를 작성 함께 제출하면, 동사무소에서 신청인과 상담을 실시한 후 신청인의 장애를 진단하기에 적합(신청인이 치료를 받던 진료기관 등)한 진단기관을 선정하여 장애진단 의뢰서를 교부하고, 신청인이 의료기관에 가서 진단(비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정부지원(일부), 일반장애인 : 본인부담)을 받으면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서(장애등급 표기)를 동사무소로 보내며, 동사무소에서는 장애진단서를 확인한 후 장애인 복지카드를 교부하며 소요기간은 약 1개월이다.

다. 등록장애인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지체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언어 장애	지적	뇌병변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기타
계	19,612	11,127	1,959	1,922	964	1,911	143	514	533	89	450
1급	1,779	435	280	64	264	553	70	38	34	4	37
2급	2,926	777	58	416	358	546	46	212	409	17	87
3급	3,501	1,683	112	375	342	504	27	264	0	65	129
4급	2,790	2,031	106	428	0	127	0	0	0	0	98
5급	3,901	3,088	147	358	0	116	0	0	90	3	99
6급	4,715	3,113	1,256	281	0	65	0	0	0	0	0

2.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가. 장애수당

1) 목 적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기초생활보장대상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2) 개 요

수급중증장애인(1급, 2급)에게는 매월 13만원, 경증장애인(3급-6급)에게는 매월 3만원, 차상위중증장애인에게는 매월 12만원, 차상위경증장애인에게는 매월 3만원의 생계 보조수당 지급

3) 2008년도 추진실적 : 12회 2,843명 / 2,353,275천원

4) 향후 전망

지속적인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 신청 홍보 및 지급 대상자 관리 철저로 저소득 장애인 가구 생활안정을 도모할 것이다.

5) 2009년도 업무계획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예산범위내 장애수당 지급

나. 장애아동 수당

1) 목 적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및 차상위 가구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보호·부양자에게 장애 아동 보호·육성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아동의 양육환경 개선 및 생활안정 도모

2) 개 요

수급중증장애아동에게는 매월 20만원, 경증장애아동에게는 매월 10만원, 차상위중증 장애아동에게는 매월 15만원, 차상위경증장애아동에게는 매월 10만원의 생계보조수당 지급

3) 2008년도 추진실적 : 12회 1,720명 / 311,710천원

4) 향후 전망

지속적인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대상자 신청 홍보 및 지급 대상자 관리 철저로 저소득 장애인 가구 장애아동의 양육 환경 개선 및 생활안정을 도모할 것이다.

5) 2009년도 업무계획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예산범위내 장애수당 지급

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1) 목 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 도모

2) 개 요

의료급여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진료시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 지원

(단, 의료급여 적용분에 한함)

3) 2008년도 추진실적 : 1,263개소 병원 / 214,883천원

4) 2009년도 업무계획 : 의료기관에 예산범위내 진료비 지원

라.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1) 목 적**

비장애인에 비하여 소득활동에 제한을 받으면서 의료비, 교통비, 보장구 구입비 등 교육 간접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최소한의 교육기회 보장과 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 도모

2) 개 요

저소득 1~3급 장애인 중·고등학생과 1~3급 장애인의 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전액, 교과서대 109천원(연 1회), 중학생의 부교재비 33천원(연 1회), 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5천원(1학기 22천원/2학기 23천원) 지원

3) 2008년도 추진실적 : 4회(분기별) 10명 / 9,393천원

4) 향후 전망

지속적인 장애가구의 자녀교육비 대상자 신청 홍보 및 지급 대상자 관리 철저로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교육기회 제공 및 생활안정을 도모할 것이다.

5) 2009년도 업무계획

저소득 장애인 가구 교육 기회 보장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총 예산범위내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급

마.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1) 목 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

2) 개 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들에게 재활보조기구를 교부하여 생활능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한다.

교부품목은 장애유형에 따라 욕창방지용 매트,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음성탁상시계, 휴대용 무선신호기, 자세보조용구 등을 교부하며, 2008년에 교부품목을 지원받은 자는 제외

3) 2008년도 추진실적 : 2회(상·하반기) 7종 126개 / 11,891천원

4) 2009년도 업무계획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자체계획 수립 및 저소득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교부

5) 향후 전망

지속적인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자 신청 홍보 및 지급 대상자 관리 철저로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할 것이다.

바. 장애인 보장구 지원

1) 목 적

등록장애인인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보장구에 대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일상생활의 편의증진과 사회참여촉진 도모

2) 개 요

의료급여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에게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휠체어, 정형외과용구두, 보청기 등 58품목의 장애인 보장구에 대하여 보장구별 지원기준액 범위내에서 전액 지원

3) 2008년도 추진실적

(단위 : 건/천원)

구 분	계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휠체어		기타	
	건수	지원액	건수	지원액	건수	지원액	건수	지원액	건수	지원액
2008년	215	121,927	9	18,810	20	33,400	55	25,750	131	43,967

4) 2009년도 추진계획

장애인 보장구급여비 지원 자체계획 수립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인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장구급여비 지원

5) 향후 발전방향 및 전망

지속적인 장애인 보장구 지급 대상자 신청 홍보 및 지급 대상자 관리 철저로 저소득 장애인의 편의증진 및 사회참여촉진 도모

3.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

가. 목 적

- 1) 장애인일자리 제공을 통한 장애인 차별해소와 사회통합 실현
- 2) 일반 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유형별 일자리를 발굴·보급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경험을 제공하고 일반노동시장으로의 진출을 촉진
- 3) 각동 주민센터에 장애인주민센터도우미를 배치함으로써 지역사회 장애인 복지행정 참여증진 및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지원

나. 2008년도 추진실적

1) 장애인일자리사업 시행

구 분	기 간	인 원	예산집행액(원)	비고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2008. 1월 ~ 12월	20명	166,590,900	
장애인복지일자리	2008. 4월 ~ 12월	3명	4,547,760	

2) 장애인일자리사업 장애유형별 참여자 현황

연번	구분	합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계	23		2	2	4	8	7
1	지체	18		2	1	2	8	5
2	시각	2						2
3	뇌병변	1			1			
4	간질	1				1		
5	언어	1				1		

다. 향후 전망

지속적인 사업추진으로 근로가능 장애인을 위한 경제활동 기회를 부여하고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 마련하여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도모할 것이다.

라. 2009년 추진계획

구 분	기 간	인원	근무형태	보수기준(월)	비고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2009.1월 ~ 12월	17	주 5일 1일 7시간	855천원/1인 (4대보험 본인 및 사업주부담분포함)	
장애인복지일자리	2009.3월 ~ 9월	10	주 12시간 월 48시간	200천원/1인	

4.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추진

가. 목 적

- 장애아동의 치료교육과 발달에 필요한 적정 사회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장애아동의 성장발달 장애징후에 대한 조기 중재로 2차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 촉진
- 성장기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치료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장애아가정 가계부담 경감

나. 향후 전망

장애예후 또는 장애상태에 이른 장애아동의 재활치료서비스를 통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또한 장애를 방치·심화시킴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치료를 통해 부모의 정서적 불안을 해소시켜 가정내 정서의 안정을 도모할 것이다.

다. 2009년 업무계획

구 분	기 간	대 상	지 원	비고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2009.2월 ~ 2010.1월	-만18세미만의 뇌병변, 지적,언어,청각,자폐성, 시각 장애아동 -전국가구평균소득50% 이하가구	-수급자 : 22만원 -차상위 : 20만원 -전국가구평균 50% 이하:18만원 -언어,미술,음악,인지, 심리치료 등 제공	

5.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사업 추진

가. 목 적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재활과 사회참여 증진

나. 2008년도 추진실적

구분(주관)	기 간	인 원	사업내용	비고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보건복지가족부)	2008.1월~12월	2,130명	신변처리, 가사활동, 일상생활, 이동보조, 동료상담 등 활동보조지원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인천시)	2008.1월~12월	155명		

다. 향후 전망

중증장애인에게 가사지원, 신변처리, 이동지원 등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 스스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자립심 고취 및 사회참여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라. 2009년 업무계획

구 분	기 간	대 상	지원시간	비고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보건복지가족부)	연중	만6세이상 ~ 만65세 미만의 1급 장애인	월 40~180시간 범위내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인천시)	연중	만6세이상 ~ 만65세 미만의 1급장애인중 <u>시 선정통보자</u>	월 10~80시간 범위내	